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출자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제출연월일	2015. 6. .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 운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명확히 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구의회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부서의견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9조(준용) 삭제	제9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수정안 동의

나.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강남구의회 수정사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므로 구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

-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로, “포함) 및”을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로,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강남구 지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u>다만</u> ,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 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u>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u>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u>다만</u> , <u>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u> ----- <u>강남구 지출원</u> ----- ----- ----- ----- ----- ----- -----.
③ 「지방재정법」 중 <u>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u> 규정은 기금운용 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 <u>재무관</u> ----- ----- ----- -----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 략) ② <u>주요 항목 지출금액 등의 변경 시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 할 수 있다.</u>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u>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생 략)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u>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u>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문화국 청소행정과	
연 락 처	(02) 3423 - 5963